

④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서비스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이 범위 안에서 급여 제공 일수와 서비스 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2026년 재가 노인장기요양 이용 비용 안내]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인상률	8.95%	11.89%	2.86%	2.85%	2.71%	2.88%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30분	16,940	2,541	17,450	2,618
60분	24,580	3,687	25,320	3,798
90분	33,120	4,968	34,120	5,118
120분	42,160	6,324	43,430	6,515
150분	49,160	7,374	50,640	7,596
180분	55,350	8,303	57,020	8,553
210분	61,670	9,251	63,530	9,530
240분	68,030	10,205	70,080	10,512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5년		'26년	
	수가	본인부담	수가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88,990	13,349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6	80,230	12,035
차량 미 이용	48,690	7,304	50,100	7,515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월 서비스 이용액에 대하여 공단에서 정한 경감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 그 밖의 비용 : 이용자(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해당 금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